의료인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윤민섭



의료인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윤민섭



머 리 말

의료서비스는 소비자의 신체 및 생명과 매우 밀접한 전문분야로서 소비자의 자기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실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전문분야라는 이유로 정보제공이 제한적이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의료과실 등이 이슈화되면서 의료인에 대한 불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및 권리를 보장하고자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설립, 설명의무의 확대, 의료비 관련 정보게시 등 많은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되어 있어,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요인에는 의료기기의 성능, 의료기법의 차이 등도 있지만, 가장 큰 결정요인은 의료인의 개인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면허의 유효성, 의료인에 대한 징계정보 등과 같은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이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력 등과 같은 정보만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8년 7월 9일에 의료인의 징계정보 등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개선권고에 관한 후속 연구로서 의료인정보 공개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고,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의 해외사례 및 국내 유사제도를 검토하여, 의료인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연구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원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향후 본 보고서가 관련 제도개선 및 소비자정책에의 활용 등을 위해 널리 참고 되어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2018. 12.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 화 숙

I. 연구 배경 및 목적

- □ 2018년 7월 9일 개최된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지향성 개선과 제 중 하나로 "의료인 징계정보의 공개"를 의결하였고, 관계 중앙행정기 관인 보건복지부에 개선권고 하였음
 - 현재, 의료인에 대한 정보 중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면허, 의료분쟁, 의료과실 및 범죄 등의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제한되어 있음
- □ 의료인정보공개제도는 국내에서는 시행된 바가 없던 제도로서 해당 제도 를 도입함에 있어, 이미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유사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연구 결과

- □ 의료인정보의 법적 성질
 - 이 의료인정보는 소비자가 의료인을 선택할 때 개별 의료인의 진료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면허정보, 의료경력, 학습 및 연수경력, 수술 경력, 과거 의료과실 기록 등이 해당함

○ 의료인정보는 해당 정보의 내용상 의료인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함

□ 의료인정보공개제도 관련 쟁점 검토

-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위헌판단에 있어 의료인정보공 개제도의 도입 자체보다는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가 문제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가 징계사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개기간 등이 광범위한 경우 범위의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현행제도의 규제가능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범죄 정보 공개,「의료법」상 징계제도 등의 관련 제도가 있지만, 현행제도는 공개대상의 범위 및 내용에 있어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알권 리를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 (다른 전문직과 형평성) 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사 등의 전문직의 경우 징계정보 등과 같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적 낙인) 의료인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의료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해외 및 국내 사례의 경우에도 공개기간 등을 정하고 있음)
-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공개대상 의료인정보의 범위가 제한 없이 확대되는 경우 앞서 살펴본 사회적 낙인효과 등으로 인하여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의 역선택*) 의료인의 징계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징계정보 뿐만 아니라 연수 경력 등도 공개하면 역선택의 문제가 축소될 것으로 판단 됨(해외의 경우 연수경력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출생연도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 부정적인 정보공개로 인하여 소비자가 숙련된 의료인이 아닌 미숙한 의료인을 선택 하는 것을 의미함

□ 해외 의료인정보공개제도 분석

- 이 (미국) 주정부의료위원회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메사추세츠주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50개주에서 의료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각 주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알칸사스주의 경우 의료인의 주소(일반 주소 및 전화번호) 및 면허정 보(면허번호, 취득날짜, 유효기간 만기, 유효성 등)만을 공개함
 - 반면, 메사추세츠주, 텍사스주, 뉴욕주 등의 경우에는 면허정보 등 이 외에도 징계정보 등에 대한 것도 공개하고 있음
- (캐나다) 캐나다도 각 주별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주법에서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의과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의료인정보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홈페이지(www.cpso.on,ca)에서 '의사찾기(Find a Doctor) 를 통해서 면허의 유효성 및 실습정보 등을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음
 - 반면, 마니토바주의 경우 주 의료법(The Medical Act) 및 내규를 통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확보 및 의료인 기본권 침해 최소화) 의료인의 면허정보 뿐
 만 아니라 징계정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낙인효과
 및 의료인 기본권 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 국내 전문직 정보공개제도 분석

-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사에 대한 징계정보는 법률(변호사법 및 회계사법) 및 내규(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에 근거하여 각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음
-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전문직의 경우
 당사자의 자질 및 능력이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향상을 위해 정보제공이 필요했기 때문임
 - 징계정보공개제도 도입과 관련된 입법취지 등을 살펴보면, 소비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확보, 해당 시장에 대한 신뢰 성 확보 등을 이유로 명시하고 있음

Ⅲ. 정책과제

소비자의	알권리를	후보 및	정보투	목으로	. 인한	부작용	· 예방을	위해	징계
정보 뿐민	<u></u> 아니라	면허의 유	구효성,	성별 및	! 출생	년도,	연수경력	및 인	[증증
명서 등과	· 같은 의	료인정보	로 공개	대상 정.	보의 벽	범위를	확대할 필	요가	있음

의료인정	정보공개제.	도를 도입함여	에 있어,	소비계	아중심,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의료인정보	브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 -	등을 기	준으로 한	한 제도설	계가
필요함								

차 례

머리말	i
국문요약	iii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7
제2장 의료인정보에 대한 검토	9
제1절 의료인정보 현황	11
1. 의료 면허 제도	11
2. 의료인정보 관리 현황	12
제2절 의료인정보의 법적 성질	15
제3절 의료인정보공개제도 관련 쟁점	17
1. 쟁점의 정리	17
2. 쟁점에 대한 검토	18
3. 소결	
제3장 해외 의료인정보공개제도	27
제1절 미국의 의료인정보공개제도	29
1. 의료인정보공개제도의 연혁	29
2. 뉴욕주 의료인정보공개제도	
제2절 캐나다 의료인정보공개제도	35

1. 의료인정보공개제도35
2. 마니토바주 의료인정보공개제도 ······ 3년
제3절 소결40
제4장 국내 전문직 정보공개제도 ······ 41
제1절 변호사징계정보 공개제도43
제2절 희계사징계정보 공개제도46
제3절 세무사징계정보공개제도 49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53
제1절 의료정보공개제도 도입 방향 55
제2절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기간 5년
1.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5년
2. 정보공개 기간59
[별첨 자료] 미국의 의료인정보공개제도 관련 규정 61
1. 뉴욕주
2. 캘리포니아주70
3. 조지아주
4. 뉴저지주 81
5. 텍사즈주 89
참고문헌 100
Executive Summary 101
LACCULIVE Guillilary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 □ 의료인에 대한 정보 중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의료면허, 의료분쟁, 의료과실 및 범죄 등의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 개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제한되어 있음
 - 소비자가 의사의 경력 등을 보고 해당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나, 이 또한 의료인의 과 실. 징계사실 등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가 제한되어 있음
- □ 소비자가 의사를 선택함에 있어, 지인소개, 이용수기 및 홍보성 자료 등과 같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준으로 병원 및 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는 의사의 경력(의료과실 및 범죄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택할 수 있음
 - 2014년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한 집도의¹⁾는 형사재 판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 □ 소비자의 알권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사의 과거 징계정보 등에 대한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구가 있었고, 자유한국당 송석준의원이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이 이에 관한질의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음

¹⁾ 신해철 의료사고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8년 5월 11일 유죄를 확정하였음

- □ 미국의 경우 정보공개의 범위 및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의료인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정보공개의 범위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면허의 유효성 및 소속 병원의 명칭 등을 공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주가 있는 반면, 징계정보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 국내의 경우 변호사, 세무사 등과 같은 전문직의 경우 징계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 공정거래위원회와 우리 원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의사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을 위해 의료법 등의 개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함
 - 우리 원은 의료인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보건복 지부가 관할하는 방안(1안), 의료인별 중앙회가 관할하는 방안(2안) 등을 제시하였음²⁾
- □ 2018년 7월 9일 개최된 2018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중 하나로 "의료인 징계정보의 공개(복지부)"를 의결하였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개선권고 하였음³⁾

²⁾ 윤민섭 외 4인, 「2018 법령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자 료집, 참조

^{3) 2018}년 7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 표. 5면

□ 의료인정보공개제도는 국내에서는 운영된 바 없었던 제도로서 해당 제 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미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관련 사례 를 살펴보고, 국내 유사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 연구방법은 의료인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캐나다의 관련 법률 및 국내 유사제도에 관한 문헌을 연구하는 방식으 로 수행함
 -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주무부서 및 이해관계자(의료인 및 환자 등)를 방문하여 인터뷰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제도의 효용성 및 부작용에 대해 할 수 있으나 예산 및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헌연구로 한정함
- □ 연구범위는 미국, 캐나다의 관련 법률 및 국내 유사제도로 한정하되, 의료인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점에서 국내 개인정보제도 등과 같은 연관성 있는 제도도 대상으로 포함함

제2장 의료인정보에 대한 검토

제1절 의료인정보 현황

제2절 의료인정보의 법적 성질

제3절 의료인정보공개제도 관련 쟁점

제2장 의료인정보에 대한 검토

제1절 의료인정보 현황

1. 의료 면허 제도

- □ 국가가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하는 제도를 면허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료면허가 있어야 함
 - 운면면허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우 뿐만 아니라 변호사, 변 리사, 노무사 등과 같이 특정 직무에 관한 경우에도 면허제도를 도입 하고 있음
- □ 의료와 관련해서는 사람의 신체 및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면허제도로 관리하고 있음
 -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 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제재(동법 제87조 및 제88조)의 대상이 됨
- □ 의료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도 제한하고 있는데, 의료인의 유형에 따라 응시자격에 차이가 있음

○ 의료인의 유형에 따라 응시자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각 유형에 따라 가능한 의료행위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임

〈의료인 유형별 국가시험 응시 자격요건〉

구 분	응시 자격 요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1.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조산사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간호사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2. 의료인정보 관리 현황

□ 면허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면허신청 및 갱신, 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별도 사이트(http://lic.mohw.go.k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사이트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허소지자 및 면허신 청자 등과 같은 의료인을 위한 행정업무 중심이며, 환자 및 일반 소 비자를 위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는 이용안내에서도 일반 소비자가 개 별 의료인의 면허번호 또는 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 내하지 않음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



□ 현재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인이 공개 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면허의 유효성, 의료경력, 징계이력, 의료과실 유무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음

- 소비자가 의료인 중 의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 시설에 게시되어 있는 의사의 성명, 의사가 달고 있는 명찰에 기재된 성명,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등에 불과함
- 처방전에 의사면허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면허번호는 사후 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의료인면허의 유효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이에 소비자가 진료시 의료인을 선택하고자 하여도 선택기준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가 없어. 알권리 뿐만 아니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음
 -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때, 해당 물품 등의 구체적인 사양 및 과거 이력정보 등 객관적 정보와 이용후기 등과 같 은 주관적 정보를 통해 비교하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선택하고 있음
 - 그러나 의료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정보가 공개되어 있 지 않아, 이용후기 또는 지인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제2절 의료인정보의 법적 성질

- □ 일반적으로 소비생활을 함에 있어, 소비자가 구매 또는 이용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사업자에 관한 기본 적인 정보보다는 물품 등에 관한 정보임
 - 이는 해당 물품등의 제공하는 사업자보다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중요 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4호, 2018, 1, 2., 일부개정)에서도 물품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부재한 상황임
 - 다만,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가 필 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유추할 수 있음
- □ 소비자가 의료인을 선택할 때에는 개별 의료인의 진료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정보가 소비생활에 있어 필요한 정보 라고 할 수 있음
 - 의료인정보에는 면허정보, 의료경력, 학습 및 연수경력, 수술경력, 과 거 의료과실 기록 등이 있음
- □ 의료인정보는 해당 정보의 내용상 의료인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다."라 고 정의함
- 면허번호, 의료경력, 수술경력 등은 성명등과 같이 개인을 직접적으 로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될 수 있고, 개별 의 료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함
- □ 따라서 의료인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개인의 동의 또는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여야 함
- □ 현행 의료법 등 관련 규제에서는 의료인정보를 공개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료인정보는 개별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이 외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로는 약력, 수상이력 등 의료능력 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경우가 많음
- □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의료인정보의 경우에도 그 진실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음
 - 다만, 해당 정보를 광고의 형태로 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의 적용을 받게 되어. 허위의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제3절 의료인정보공개제도 관련 쟁점

1. 쟁점의 정리

- □ 2018년 7월 9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개선권고의결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업의협의회 등은 해당 권고에 반발하였음4)
 -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법률로도 규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징계정보등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였음
 - 대한의사협회의 주장5)은 다음과 같음
 - 의료인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며, 의료인만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임
 - 현행 법령상 의료인을 막론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상공개와 함께 취업을 제한토록 함으로 써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음
 - 다른 전문가 직역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의료인에게만 적용 하는 것은 형평성 위반임
 - 징계정보가 공개된 의료인이 사회적으로 추방되는 결과가 초래됨
 -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함

^{4) 2018}년 7월 16일 메디컬뉴스 보도자료,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 무엇이 문제일 까?"(원문: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6533)

^{5) 2018}년 7월 12일 대안의사협회 보도자료,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의료업 접으라는 의미" (원문: http://www.kma.org/notice/sub1 view.asp)

그 내용은 의료인 개인을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함

-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대상으로 정해져 있 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등은 동 법률에 따라 이루어야 함
 - 의료인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함
- □ 그러나,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해 당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익이 더 큰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즉, 의료인정보공개로 인한 소비자의 이익과 의료인의 이익을 법익형 량할 필요가 있음
- □ 의료인정보공개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로서 동 제도가 의료인의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임
 - 유사한 제도로서 변호사 및 세무사 등 전문직의 징계정보 공개제도가 있지만, 이에 관해서도 위헌성이 검토된 바 없음
- □ 의료인정보공개제도가 위헌인지 여부는 해당 제도가 구체적으로 구현 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제도를 구체화할 때 위헌성 판단기준인 ① 이중처벌금지의 원 칙, ②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의 원칙, ③ 평등의 원칙, ④ 과잉금 지의 원칙, ⑤ 적법절차의 원칙, ⑥ 재판을 받을 권리, ⑦ 포괄위임입 법금지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함

- □ 그러나 위헌판단에 있어 의료인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자체보다는 공개 되는 정보의 범위가 문제시 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와 의료인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도자체 는 법익형량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가 징계사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 개기간 등이 광범위한 경우 범위의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나. 현행제도로 충분한 규제가능

- □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징계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없이도 현행 규제만으로 목적달성 가능하다고 함
 - 성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되고 있으며.
 - 의료과실 등에 있어서도 의료법에 따라서 징계받고 있음
- □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징계정보공개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없 이도 현행 규제만으로 목적달성 가능하다고 함
 - 성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되고 있으며.
 - 의료과실 등에 있어서도 의료법에 따라서 면허 정지·취소 등의 징계 받고 있음

- □ 그러나, 의료인정보공개제도의 도입목적은 소비자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서 알권리를 보장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안전성을 확보할 기회를 주는 것에 있음
 - 직접적인 목적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이지만, 그로 인한 간접효과로는 능력없는 의사의 조기퇴출, 환자의 안전성 강화 등이 있음
- □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미성년자대 상 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의료인이 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개대상 이 아니며.
 - 공개대상범죄라고 하더라도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시, 성폭력범죄 전과사 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으로 의료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또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인지한 의료인의 성범죄정보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지인들간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됨
- □ 의료인정계에 관한 사항은 의료서비스가 의료인의 능력과 직결된 사항으로 의료인의 능력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지만, 소비자는 면허 의 유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 소비자는 의료인의 징계여부에 대해서 확인 불가능함

다. 다른 전문직과 형평성

- □ 의료인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관리,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 등을 동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직역임
- □ 분야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변호사, 회계사 및 회계사 등의 전문직의 경우 징계정보 등과 같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음
- □ 후술하는 미국의 경우 의료인 뿐만 아니라 마사지사, 헬스트레이너, 이 미용사 등에 관한 정보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음

라. 징계정보가 공개된 의료인의 사회적 낙인

-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장계정보가 공개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 사회적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 낙인효과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론임
 - 즉, 의료인이 정계받은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의료인을 범죄자에 준하여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도 범죄자로 인식하여 해당 의료인은 더 이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임

- □ 의료인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의료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 가능 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 을 감소할 수 있음
 - 후술하는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변호사 등 의 경우에도 징계 및 범죄 정보 등과 같은 부정적 정보에 있어서는 공개기간을 지정하고 있음

마.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 □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 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구체적 내용은 ① 직업선택의 자유. ② 직 업수행의 자유. ③ 직장선택의 자유로 구분할 수 있음이
- □ 그러나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절대적 기본권이 아 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로써 제한 가능
- □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해당 직업의 수행하는 방식, 예를 들어, 광고 및 표시 제한, 영업의 전략 제한 등과 같이 구체적인 수행방식에 있어 법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임
 - 의료인정보공개제도가 직접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현재 명확한 견해는 존재하지 않음

⁶⁾ 권건보,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주요 법리 분석", 아주법학 제12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08, 22~24면.

- □ 공개대상 의료인정보의 범위가 제한없이 확대되는 경우 앞서 살펴본 사회적 낙인효과 등으로 인하여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않을 것으로 생각됨
 - 후술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징계 및 범죄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 으나, 공개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 해당 의료인의 불복절차 등과 같은 권리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직 업수행의 자유와 관련된 위헌소송 등은 없었음

바. 소비자의 역선택

- □ 의료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소비자는 의료인 등의 광고, 주변 지인의 추천 등으로 의료인을 선택하는데, 이 경우 부정확하고 과 장된 정보로 인하여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음
- □ 반면, 의료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역선택 가능성이 있음
 - 문제는 역설적으로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의사의 경우 진료 등의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즉, 부정적인 정보공개로 인하여 소비자가 숙련된 의료인이 아닌 미 숙한 의료인을 선택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정보만이 아니라 의료인의 출생연도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의료인에 대한 정보 중 어떠한 정보도 소비자에 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며,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하여 의료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임
 - 징계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징계정보 뿐만 아니라 연수 경력 등도 공개하면 역선택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3. 소결

- □ 의료인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계의 반론은 제기가능한 사항이 나, 제도의 도입시 치밀한 설계로 의료계의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 □ 소비자와 의료인간 법익을 조율하여 의료인정보공개제도가 정착하면 의료시장에서의 소비자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의료인정보공개제도는 의료서비스간의 품질경쟁을 촉진시켜 의료서 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제3장 해외 의료인정보공개제도

제1절 미국의 의료인정보공개제도

제2절 캐나다 의료인정보공개제도

제3장 해외 의료인정보공개제도

- □ 의료인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조사된 바에 따르면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의료인정보를 공중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료인면허가 각 주법에 따르 고 있는 만큼 각 주별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에 있어 차 이가 있음
- □ 이하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각 주법에서 의료인정보를 어느범위까지 공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제1절 미국의 의료인정보공개제도

1. 의료인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 미국 메사추세츠주가 1996년 최초로 의료인정보공개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하였음
 - 이후 플로리다주, 로드아일랜드주,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등으로 확대되었음
- □ 주정부의료위원회연맹(FSMB,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에 서 2000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개주에서 의료인의 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나, 각 주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알칸사스주의 경우 의료인의 주소(일반 주소 및 전화번호) 및 면허정 보(면허번호, 취득날짜, 유효기간 만기, 유효성 등)을 공개함
- 반면, 메사추세츠주, 텍사스주, 뉴욕주 등의 경우에는 면허정보등뿐만 아니라 징계정보 등에 대한 것도 공개하고 있음
- □ 의료인정보공개의 범위의 차이만 있을 뿐 일반 소비자에게 웹사이트 등 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알칸서스주 의료위원회 홈페이지〉

□ 이하에서는 뉴욕주의 의료인정보공개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함

2. 뉴욕주 의료인정보공개제도

□ 뉴욕주는 2000년 「환자 건강정보 및 질 개선에 관한 법」(Patient Health Information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0)을 통해서 뉴욕주 통합보건법(New York State Consolidated Public Health Law)이 개정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의료인정보공개제도가 제도화되었음

- □ 뉴욕주 보건부는 통합보건법 § 2995-a. Physician profiles에 따라 의 료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일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형식으로 프 로파일을 작성해야함
- □ 뉴욕주 보건부가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정보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하고 있는데, 선택정보의 경우 의 사의 선택에 따라 보건부에 대한 정보제공여부 및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뉴욕주의 수집 및 공개대상 의료인정보〉

	구분 내용	
	범죄기록	뉴욕 주 또는 기타 관할권의 법규에 따라 최근 10 년 이내에 보건부 규정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면허관련 징계사실	최근 10 년 이내에 뉴욕주 또는 다른 주의 유사한 면허 취득 기관 이 취한 조치 (기밀로 유지되는 조치는 제외한다).
필수	제한면허 내용	특정 분야, 유형, 범위 또는 의료 행위 조건과 관련하여 면허 소지 자에게 취해진 현재의 제한에 관한 진술.
정보	병원내 정계사실	의사가 제공한 또는 제공할 환자치료의 질과 관련하여 현재의 징계 대신에 병원에서 취한 조치에 의해, 정당한 절차가 가능하거나, 소 진되거나, 이를 포기했거나 또는 의료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였거나 특권을 제한한 경우, 해당 의사가 제공한 또는 제공할 환자치료의 질과 관련하여 지난 10년 이내에 병원이 손실을 입었거나 비자발적 으로 특권을 제한당했거나 또는 병원의 전문자격 갱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실

	의료과실 정보	 최근 10년 이내에 법원 및 중재재판소가 판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진 의료과실을 횟수를 보여주는 진술서 최근 10년 이내에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진 모든 의료 과실의 합의에 대해 보여주는 진술서
	학력 정보 등	 출신 의과대학의 이름 및 졸업 날짜 대학원 과정 전문의 자격증 및 자격증 날짜 뉴욕주에서 실습을 마친 날짜
	근무지	근무하는 병원의 이름
	간행물 정보	최근 10년 이내에 동료가 검토한 의학 문헌에 출간한 간행물에 관한 정보
	봉사 및 수상	 전문 봉사 또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 수상에 관한 정보
선택 정보	근무 경력	1차 진료지역 및 실습지도의사 성명
	통역 서비스	통역서비스 유무
	보험여부	의료보험적용여부
	제휴관계	면허 소지자가 계약, 고용 또는 기타 제휴 관계에 있는 보건 계획

보건부가 수집한 위의 정보는 일반인에게 배포되기 전에	해당	의료인에
게 사본을 제공하여 수정의 기회를 주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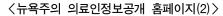
의료인이	위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의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
하게 제	공한 기	경우 제:	재대상이	됨				

[□] 뉴욕주는 별도의 홈페이지(www.nydoctorprofile.com)를 통해서 의료 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홈페이에서 성명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간 약한 정보(면허번호, 면허발급일자, 정보업데이트 일자, 주소 등이 나타남
- 보다 상세한 정보는 간략정보 하단의 교육정보 등을 클릭하면 관련 정보가 게시됨

〈뉴욕주의 의료인정보공개 홈페이지(1)〉

NEW YO	RK STATI	E	
Search for a Physician	Search for a	Physician	-
About the Physician Profile Physicians: Update your profile FAQ Search Tips Dictionary	Fill in at least 1 name to limit yo		ry enter one or more characters of the first
Disclaimers	Physician Se	arch Criteria	
Contact Us	Last name:		
Give Us Your Feedback	First name:		
Leave this site: = Link to NYS DOH Home Page, or	Search	Clear Search Fields	Advanced Search
Link to NYS DOH Center for	Go back	to previous page	





- □ 주정부의료위원회연맹(FSMB)의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이외에도 약 30 여개주가 의료인면허정보뿐만 아니라 징계정보 및 범죄기록 등도 공개 하고 있음
 - * 참고자료로서 의료인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주법의 원문을 별첨함

제2절 캐나다 의료인정보공개제도

1. 의료인정보공개제도

- □ 캐나다의 의료인정보공개제도는 미국과 유사하게 각주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별도의 의료위원회 또는 보건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각 주별 로 있는 의과대학에서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다만, 모든 의과대학에 해당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주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에 해당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 □ 캐나다도 각 주별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주법 에서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의과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의료인정보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홈페이지(www.cpso.on.ca)에서 '의사찾기 (Find a Doctor)를 통해서 면허의 유효성 및 실습정보 등을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음
 - 반면, 마니토바주의 경우 주 의료법(The Medical Act) 및 내규를 통 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캐나다의 마니토바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2. 마니토바주 의료인정보공개제도

- □ 마니토바주는 마니토바주립대학교 의과대학(The College of Physicians & Surgeons of Manitoba, 이하 마니토바 의과대학)에서 의료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마니토바 의과대학은 주 의료법(The Medical Act) 제19.1(1)조에서 는 위원회는 대중에 공개하기 위해 개별 의료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의료인정보 규정(Physician Profile Regulation)에 서 구체화하고 있음
- □ 마니토바 의과대학은 대학홈페이지의 첫화면 메뉴에서 의료인정보에 대한 메뉴를 두고 있음
 - 의료인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검색화면이 나타나고, 성명 등과 같은 검색용어를 통해 검색하여 찾고자하는 의료인의 정보가 표시됨

〈마니토바주 의과대학 홈페이지〉



The Gallege of Physicians & Surgeons of Manitoba protects the public as consumers of medical care and promotes the safe and ethical delivery of quality medical care by You only need to choose one of the following Select Search Type (Any) Sease enter your search criteria to view results

〈마니토바주 의과대학 의료인 검색화면〉

- □ 마니토바 의과대학은 Regulation 104/2005(Physician Profile Regulation) 에서 의료인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Regulation 104 제4조부터 제5항에는 의료인정보 중 공개대상의 범 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필수공개정보이며,
 - 사무실 전화번호 등의 일부 정보는 선택사항임

〈마니토바주 공개대상 의료인정보〉

구분 내용		내용
필수정보	개인정보	 대학에 등록된 현재 이름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성별 집 또는 주된 의료행위 장소의 주소 졸업한 의대 명칭 및 졸업년도 대학원에서 받은 임상교육의 유형, 장소, 완료일 마니토바에 최초로 등록한 날

	면허관런 정보	 전문분야 영역 마니토바 주 또는 다른 지역에서 규제기관이 최근 10년이내 취한 최종 징계조치의 날짜 및 간략한 설명(항소 등 이의제기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제외) 면허에 부과된 현재 제한 사항 면허가 정지된 경우 그 개시일 캐나다 및 그 외 국가의 면허 증명서
	의료과실 정보	지난 10년간 캐나다 법원에 제기된 의료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날짜, 해당 법원의 이름, 항소한 경우 그 사실 * 항소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의료과실정보는 기재되지 않음
	범죄정보	캐나다 형법, 제한 의약품 및 물질 법, 식품과 의약품 법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판결의 날짜 및 해당 법원의 이름. 항소한 경우 그 사실
선택 정보	기타정보	 사무실 전화번호 휠체어의 접근 가능성 사용언어 및 통역 가용성 강의 내역

- □ 마니토바주 의료정보공개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표시는 정보의 유형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음
 - 표시되어야 할 정보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기재 하여야 하며,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기록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마니토바주 의료인정보 공개사항〉

구분	내용		
의료인 정보	 의료인 성명 면허 등록일자 성별 		
전문 분야	전문분야		
 의료행위 주소	근무지 주소		
자발적 정보	 사무실 전화번호 휠체어의 접근 가능성 강의 사항 사용언어 및 통역 가용성 		
의학 교육	 졸업연도 학교명 		
대학원 수련	 수런 분야 수런 종료일 수런 국가명 		
증명서	 전문분야 증명발급기관명 국가명 		
의료과실	 판결일 법원명 항소 여부 항소일 		
형사범죄	 유죄선고일 법원명 항소 여부 항소일 		
면허제한 조건	 기간 및 조건 효력 발생일 효력 종료일 		
면허정지	 관할 지역 효력 발생일 효력 종료일 		
징계 정보	 최초결정 징계 결정일 관할 지역 이의제기여부 및 날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징계내용 		

제3절 소결

- □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에는 의료인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연방국가의 특성상 의료인에 대한 관리 등이 연방차원이 아닌 개별 주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정보공개제도도 각 주별로 차이가 있음
- □ 의료인의 면허정보 뿐만 아니라 징계정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낙인효과 및 의료인 기본권 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 정보공개의 범위에 있어서 그 정보의 대상 및 범위가 명확하며, 공개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 또한 정보공개전 당사자에게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거나, 항소 또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 그 사실도 공개되어,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제4장 국내 전문직 정보공개제도

제1절 변호사징계정보 공개제도

제2절 회계사징계정보 공개제도

제3절 세무사징계정보공개제도

제4절 소결

제4장 국내 전문직 정보공개제도

- □ 국내에서도 변호사 등의 전문직에 있어서 징계제도가 있으며, 해당 징 계내역을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음
- □ 이하에서는 국내 전문직에 대한 정보공개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함

제1절 변호사징계정보 공개제도

- □ 변호사징계정보 공개제도는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법조비리 근절,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자질부족 변호사의 퇴출 등을 위 해 2007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임
- □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징계정보의 공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음
 - 개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에 대한 징 계정보도 공개대상임

〈징계정보공개제도 관련 변호사법 규정〉

구분	내용
변호사법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개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변호사 징계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이하 "징계처분정보"라 한다)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생년월일·소속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실의 주소·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주소·명칭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영구제명·제명: 3년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로 변호사 징계 내역을 두고,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 징 계처분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변호사 징계 내역 메 뉴에서 변호사의 성명 및 사무실의 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을 말한 다)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징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대상 정보 는 징계대상자의 성명 등과 같은 개인정보와 징계내역에 관한 정보임
 - 성명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징계정보의 공개는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 공개되지 않음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정보 공개 홈페이지〉



제2절 회계사징계정보 공개제도

- □ 회계사징계정보 공개제도는 공인회계사 등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회사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회계감사의 품질 및 투명성 향상을 위 해서 2017년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제도임
- □ 공인회계사법은 2017년 개정이전에도 징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으로 징계정보의 공개에 관해서 규정(동법 제 48조의2)을 신설하였음
 -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정보가 공개대상임

〈징계정보공개제도 관련 공인회계사법 규정〉

구분	내용
공인회계 사법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 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시행 방법,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공인회계사회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 징계정보등"이라 한다)를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징계정보 등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조치"라 한다)를 받 은 회계법인의 명칭·주소
 -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징계(이하 이 조에서 "징계"라 한다)를 받 은 공인회계사의 성명·등록번호 및 소속 사무소(해당 공인회계사 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감사반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말한다)의 명칭·주소
- 2. 조치 또는 징계의 내용 및 사유. 이 경우 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 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 3. 조치 또는 징계의 효력발생일. 다만, 조치 또는 징계의 종류가 업무 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의 개 시일 및 정지기간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범위 및 기 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최초 게재일부 터 기산한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 가. 등록취소: 3년
 -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 하다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 가. 등록취소: 3년
 - 나. 2년 이하의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직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 □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인회계사징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대 상 정보는 징계대상자의 성명 등과 같은 개인정보와 징계내역에 관한 정보임

변호사법 시행령

- 성명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징계정보의 공개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7조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 공개되 지 않음
-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에 징계정보에 관한 메뉴가 있는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경우 2단계를 거쳐야 징계정보를 확 인할 수 있음

H > 한국교인회계사회 > 공연회계사 > 정계나면 징계내역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연회계사법 시행령」제37조의2에 따라 회계법인 또는 공연회계사의 장계정보등을 게재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급단티게사업 투행조약2(조치 등약 동보 및 금고 등) ① 급용위등하는 제39조제1등 및 투행조제1등에 따라 조치 모는 장계를 한 때에는 지배 없어 그 사유를 구세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병인 ㆍ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활위원회에 작각 동보하고 그 내용을 견보 또는 인터넷 홈페리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학에 따라 동생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점에 3개월 이상 제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 - 공연회계사제도 - 공연회에사업무 - SHESS 급인회계사업 사병량 배37조약2[조치 또는 집계약 교계 범위와 사병 방법) - 정기내의 - 의제 감사 함께 - 감사한 - 세우다리는 소개 회계합인 공연회계사 1/0페이지 (※0건) 범인정 Q, 医利用剂 사무소주소 조지 또는 청계의 나타 정제의 사유

장제내적이 없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정보 공개 홈페이지〉

제3절 세무사징계정보공개제도

- □ 한국세무사회는 내규인 2012년도에 윤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정보공개제도를 도 입하였음
 -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는 징계의결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고이지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규정은 아님
 - 법령에 근거가 없이 유리규정으로도 징계정보공개의 실효성을 가지 는 이유는 세무시는 한국세무사회 등록의무가 있기 때문임
- 한국세무사회 유리규정 제14조는 징계의결정보를 통보받은 이후 홈페이지 에 징계내용 및 해당 세무사의 성명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변호사 및 회계사와 달리 세무법인은 공개대상이 아님

〈징계정보공개제도 관련 규정〉

구분	내 용
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	제14조(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회장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세무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관보에 공고된 징계 의결 내용 2. 해당 세무사의 성명·사무소명·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징계 처분 확정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징계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게재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 1. 등록취소: 3년

- 2. 등록거부: 3년. 다만, 등록거부 기간이 3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3. 직무정지: 1년. 다만, 직무정지 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4. 과태료 : 3개월 5. 견책: 1개월
- □ 한국세무사회의 공개대상 정보는 징계대상자의 성명 등과 같은 개인정 보와 징계내역에 관한 정보임
 - 성명만으로 검색가능한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달리 등록번호로도 검색가능함
 -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게시하지 아니하고 징계의 근거(예를 들면 신의성실의무 위반)만을 공개하고 있음

〈한국세무사회 징계정보 공개 홈페이지〉

한국세무사회	O 세무사 징계현황	롭 >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현활 > 세무사 길게현!			
⇒ 회장인사말	★ 개시근거 및 기간 : 윤리규랑 제14호				
▷ 임원명단	등록면요 생형 사무소 주소 및 명칭	경계제분	장계사유	정제기간	용계의급임
▶ 연혁 및 소개		작무설지 1년 개원로 600만원	세루사법 제 인조(설설 영우) 위한	2019-12-01	
▶ 세무사헌황		266	세우사법 제12호(성실		
 제한 및 법인원활 지역별 개업세루사 		9502183	의무) 위한	~	
• 세무사 경계원함		2001 EE 6502183	세무사법 제12호(성설 의무) 위한	~	
세무사등록 및 입회		2(4) (g 60(2) (g	세우사법 제12조(성설 의무) 위한	_	
사무처 연락처					
첫 행아오시는 걸		2)41 E 1002/98	세투사법 제12조(정설 의무) 위한	-	
		2600.00	세루사업 제12의 4급		

제4절 소결

- □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전문직의 경우 당사자의 자질 및 능력이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임
 - 징계정보공개제도 도입과 관련된 입법취지 등을 살펴보면, 소비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확보,
 - 해당 시장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이유로 명시하고 있음
- □ 현행 전문직의 징계정보공개제도는 소비자등의 알권리 보장 및 해당 전 문직종 종사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제 도를 운영 중임
 - 징계정보의 공개범위 및 기간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제5장 결 론

제1절 의료정보공개제도 도입 방향

제2절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기간

제5장 결론

제1절 의료정보공개제도 도입 방향

- □ 2018년 7월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료인의 정계정보공개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는데, 사실상 의료인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징계정보는 의료인에게 불리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수용되는 경우 의료인의 경력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은 크게 쟁점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징계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익명처리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성명 등의 식별정보 포함되어 공개되어야 함
- □ 의료인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은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선택권 및 안전 강화라는 점에 있으나,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지 양해야할 사항으로 제도도입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함
 - 의료인정보공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공개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 인가에 관한 점은 행정상의 쟁점에 불과함
- □ 의료인정보공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준 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중심의 정보제공 범위 및 방법
 -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 의료인정보공개제도의 부작용(예를 들면 낙인효과 등) 최소화
- 의료인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2절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기간

□ 의료인정보공개제도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어떠한 정보까지 공개할 것이 며, 공개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임

1.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우선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징계정보를 공개하 라고 개선권고를 하였기 때문에 징계정보는 포함될 것이나, 의료과실 및 기타 범죄관련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음
 -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과 관련된 경우에만 면허취소 및 자격 정지 등의 징계대상이 되고,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징계대상 여부가 불분명함
- □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소비자의 알권 리 보장과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최소화이나,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연구나 논의된 사례가 부족함
-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주정부의료위원회연맹이 2000년 의료인정보공개 보고서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참조할 수 있음

⁷⁾ FSMB,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hysician Profiling", 2000, 04

○ 동 보고서는 의료인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비자가이드를 제 시하고 있으며, 각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음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FSMB의 설명〉

구분	내용			
Name of Physician	의료인 성명으로 의료인을 식별하는 기본적인 요소임. 동			
(성명)	명이인이 있을 경우 면허번호로 식별가능			
Gender	많은 경우 이름은 성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성별은 남			
(성별)	성 또는 여성의사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유용함.			
Business	의료인이 진료하는 장소, 즉 근무지를 의미			
Address/Practice Site	* 집주소는 개인정보 및 보안을 위해 비공개			
(진료 장소)	접구소는 개인정보 및 보안을 위해 미국개 			
Birth Date	소비자에 따라 특정 연령대의 의사를 선호하며, 새로운 곳			
	으로 이사할 경우 퇴직을 앞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을 회피			
(생년월일)	할 수 있음			
Medical School	소비자가 궁금한 경우 직접 문의하는 방식으로 공개 가능			
(출신학교)	도비사가 8 급한 경우 직접 단의하는 경우으로 8개 가장			
Medical School Location	의료인이 어느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했는지를 알 수			
(학교위치)	있는 정보임			
Year of Graduation	졸업연도의 경우 교육기간을 알 수 있는 정보이나, 대학원			
(졸업연도)	교육기간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여 수런기간에 대한 좋			
(글 옵 인도)	은 기준은 아님			
Degree	의료인이 어떠한 것을 전공하였는지 알 수 있는 정보임			
(학위)				
Approved Postgraduate				
Training	전문의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음			
(승인된 대학원 교육)				
License Status	정지, 취소 등과 같은 의료인 면허의 유효성을 알려주는 정			
(면허상태)	보임. 이와 관련된 징계정보 등이 공개되어야 함			
License Number	이글이지 두메시이이 거호 시글 그버귀느 카드흐 키키			
(면허번호)	의료인이 동명이인인 경우 이를 구별하는 기능을 가짐			
License Type	제한적인 면허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면허 유형)	야 함			
	1 =			

Original License Date	의료면허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짜로 의료행위가 가능했던
(최초 면허발급일)	시점을 알려주어, 의사이 경력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임
License Renewal Date	면허갱신제도 있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면허의 유효성을
(면허 갱신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임
Type of Practice	의료인에 제출하는 정보로서 미국 주정부는 이정보를 확인
(진료분야)	하지 않음.
Board Certification	의료인에 대한 인증제도 등이 있는 경우 인증증명서를 통
(인증 증명서)	해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Criminal Convictions (형사 유죄판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법원은 형사 판결을 주 의료위원회에 보고해야하고, 의료인은 범죄에 대한 모든 유죄판결 등에 대해서 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함. 다만, 모든 범죄가의료인의 능력 및 자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예를 들어, 탈세 등) 범죄의 종류에 따라 징계 및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함
Medical Malpractice (의료과실)	미국에서는 의료과실에 관한 법원 판결 및 중재판정이 있는 경우, 의료과실로 인한 합의 등의 손해배상 건수가 지난 5년간 3건 이상의 있는 경우 등 공개되어야 함
State Medical Board Orders (주의료위원회의 명령)	정계권한 기관의 정계조치에 관한 사항
Orders by Other State Medical Boards (다른 주의료위원회의 명령)	다른 주의 의료위원회 등 정계권한이 있는 기관의 정계조 치에 관한 사항 * 미국은 의료인을 각 주별로 관리하고 있음
Disciplinary Actions Taken by Hospitals (병원 자체의 징계조치)	

- □ 위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함
 - 위 보고서는 미국의 의료인정보공개제도를 기준으로 한 자료로서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도 있음

- 예를 들어, 다른 주의료위원회의 징계조치 내용은 연방체가 아닌 우 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내용임
- □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징계정보이외의 정보로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 및 정보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 면허의 유효성, 성별 및 출생년도, 연수경력 및 인증증명서 등과 같은 의료인정보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확대 필요

2. 정보공개 기간

- □ 앞서 살펴본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범죄 및 징계정보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계의 유형에 따라 공개기간을 달리 산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 제명은 3년, 정직은 1년 또는 정직기간(정 직기간이 1년보다 긴 경우), 과태료는 6개월 등 정계의 정도에 따라 공개기간도 달리 정하고 있음
- □ 직업수행의 자유 보장, 낙인효과의 최소화 등을 위해서는 각 징계조치 별로 공개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음
 - 기간을 정함에 있어 징계의 원인 및 범죄의 정도에 따라 보다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음

[별첨 자료] 미국의 의료인정보공개제도 관련 규정

- 1. 뉴욕주
- 2. 캘리포니아주
- 3. 조지아주
- 4. 뉴저지주
- 5. 텍사즈주

[별첨 자료]

미국의 의료인정보공개제도 관련 규정

1. 뉴욕주

New York State Consolidated Public Health Law 뉴욕 주 통합 보건법

원문	번역문
TITLE 1 - HEALTH INFORMATION § 2995-a Physician profiles.	제1편- 건강 정보 § 2995-a 의사 프로파일.
1. The department (department of health of the state of New York.) shall collect the following information and create individual profiles on licensees subject to the authority of the office of professional medical conduct, in a format that shall be available for dissemination to the public:	1. 보건부는 (뉴욕 주 보건부)는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일반에게 배포할 수 있 는 형식으로 전문 의료 행위 사무국의 권 한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개인에 대한 프 로파일을 작성 해야 한다.
(a) a statement of any criminal convictions (as defined by section 1,20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within the most recent ten years, under the laws of New York state or any other jurisdiction, for offenses specified by regulations of the department;	(a) 뉴욕 주 또는 기타 관할권의 법규에 따라 최근 10 년 이내에 보건부 규정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형사 소송 법 제 1.20 조에 정의되어 있다);
(b) a statement of any action (other than an action that remains confidential) taken against the licensee pursuant to	(b) 최근 10 년 이내에, 이 장(chapter) 제230조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다른 주 또는 면허 취득 기관이 취한 유

section two hundred thirty of this chapter or any similar action taken by any other state or licensing entity, within the most recent ten years;

- (c) a statement of any current limitation of the licensee to a specified area, type, scope or condition of practice;
- (d) a statement of any loss or involuntary restriction of hospital privileges or a failure to renew professional privileges at hospitals within the last ten years, for reasons related to the quality of patient care delivered or to be delivered by the physician where procedural due process has been afforded, exhausted, or waived, or the resignation from or removal of medical staff membership or restriction of privileges at a hospital taken in lieu of a pending disciplinary case related to the quality of patient care delivered or to be delivered by the physician (notwithstanding paragraph (a) of subdivision three of section twentyeight hundred three-e (2803-e) of this chapter, as added by chapter eight hundred sixty-six (866) of the laws of nineteen hundred eighty);

(i) a statement indicating the number of medical malpractice court judgments and arbitration awards within the most 사한 조치에 따라 취해진 조치 (기밀로 유지되는 조치는 제외한다).

- (c) 특정 분야. 유형, 범위 또는 의료 행위 조건과 관련하여 면허 소지자에게 취해진 현재의 제한에 관한 진술.
- (d) 의사가 제공한 또는 제공할 환자치료 의 질과 관련하여 현재의 징계 대신에 병 원에서 취한 조치에 의해, 정당한 절차가 가능하거나, 소진되거나, 이를 포기했거 나 또는 의료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였거 나 특권을 제한한 경우, 해당 의사가 제공 한 또는 제공할 환자치료의 질과 관련하 여 지난 10년 이내에 병원이 손실을 입었 거나 비자발적으로 특권을 제한당했거나 또는 병원의 전문자격 갱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실 (제2803-e조 제 3부 제(a) 항에도 불구하고, 1980년 제정된 법의 제 866장에 의해 추가 된 바와 같다)

(e)

(i) (보험법 제 315조 제 (f)항에도 불구하 고) 최근 10년 이내에 법원 및 중재재판 소가 판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불만을 제

recent ten years in which a payment is awarded to a complaining party (notwithstanding subsection (f) of section three hundred fifteen of the insurance law); and

- (ii) a statement indicating all malpractice settlements within the most recent ten years in which payment is awarded to a complaining party (notwithstanding subsection (f) of section three hundred fifteen of the insurance law).
- (A) if the total number of settlements exceeds two; or
- (B) if the commissioner determines any such settlement could be relevant to patient decision making concerning health care quality. The statemen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Settlement payments will appear in this profile only if the total number of settlements made within the past ten years exceeds two, or if the commissioner of health determines a settlement to be relevant to patient decision making Settlement of a claim may occur for a variety of reasons, which do not necessarily reflect negatively on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r conduct of the physician. A payment in settlement of a medical malpractice action or claim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 medical malpractice has occurred." The

기한 당사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진 의료과 실을 횟수를 보여주는 진술서; 및

- (ii) (보험법 제 315조 제(f)항에도 불구하 고) 최근 10년 이내에 불만을 제기한 당 사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진 모든 의료 과 실의 합의에 대해 보여주는 진술서
- (A) 총 합의 건수가 2건을 초과하는 경 우; 또는
- (B) 보건국장이 그러한 합의가 건강 관리 의 질에 관한 환자의 의사 결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진술서에 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합의금 지급은 지난 10년 이내에 발생한 총 합의 건수가 2건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보건국 장이 합의가 환자의 의사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프로파일에 표 시된다. 청구에 대한 합의는 의사의 전문 적 역량이나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할 수 있 다. 의료 과실 소송 또는 청구에 관한 합 의에서 지급은 반드시 의료 과실이 발생 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건국장은 적절한 경우 진술을 보완 할 수 있다.

commissioner may supplement such statement as may be appropriate.

- (iii) judgments, awards and settlements shall be reported in graduated categories indicating the level of significance. date and place of the judgment, award or settlement. Information concerning medical malpractice judgments, awards and settlements shall be put in context by comparing an individual licensee's medical malpractice settlements to the experience of other physicians in New York state within the same board specialty. Pending malpractice claims shall not be disclosed to the public under this section.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board from investigating or disciplining a licensee on the basis of medical malpractice claims that are pending;
- (f) name of medical schools attended and date of graduations;
- (g) graduate medical education;
- (h) current speciality board certification and date of certification;
- (i) dates admitted to practice in New York state;
- names of hospitals where the licensee has practice privileges;

(iii) 판결, 판정 및 합의는 중요도, 판결 날짜 및 장소, 판정 또는 합의를 나타내는 등급별로 구분하여 보고해야 한다. 의료 과실 판결, 판정 및 합의에 관한 정보는 뉴욕 주에서 동일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의사의 경험과 개별 면허 소지 자의 의료 과실 합의 내용을 비교하는 방 식으로 상황에 맞게 기재해야 한다. 계류 중인 의료 과실 청구는 본 조항에 의거하 여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본 조항의 어떠한 것도 현재 계류중인 의료 과실 청 구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이행하는 것을 금지 하지 아니하다.

- (f) 출신 의과대학의 이름 및 졸업 날짜;
- (g) 대학원 과정;
- (h) 전문의 자격증 및 자격증 날짜;
- (i) 뉴욕 주에서 진료가 허락된 날짜
- (j) 면허 소지자가 진료를 행하고 있는 병 워의 이름;

- (k) appointments to medical school faculties and indication as to whether a licensee has had a responsibility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within the most recent ten years;
- (l) information regarding publications in peer reviewed medical literature within the most recent ten years;
- (m) information regarding professional or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or awards;

(n)

- (i) the location of the licensee's primary practice setting identified as such; and
- (ii) the names of any licensed physicians with whom the licensee shares a group practice, as defined in subdivision five of section two hundred thirty-eight of this chapter;
- (o) the identification of any translating services that may be available at the licensee's primary practice location;
- (p) whether the licensee participates in the medicaid or medicare program or any other state or federally financed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 (q) health care plans with which the licensee has contracts, employment, or other affiliation

- (k) 의과 대학 학부에의 임명 및 면허 소 지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대학원 의학 교 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표시;
- (1) 최근 10년 이내에 동료가 검토한 의학 문헌에 출간한 간행물에 관한 정보;
- (m) 전문 봉사 또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또는 수상에 관한 정보;

(n)

- (i) 면허 소지자의 1차 진료 장소; 및
- (ii) 본 장 제238조 제5항에 정의된 대로, 면허 소지자가 집단 실습을 같이 진행한 전문 의사의 이름
- (o) 면허 소지자의 1차 진료 장소에서 제 공한 번역 서비스 확인서
- (p) 면허 소지자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프로그램 또는 기타 주정부나 연방 정부 가 재정을 지원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지 여부; 및
- (q) 면허 소지자가 계약, 고용 또는 기타 제휴 관계에 있는 보건 계획

- 2.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limit the department's authority to collect. require reporting of, publish or otherwise disseminate information about licensees.
- 3. Each physician who is self-insured for professional medical malpractice shall periodically report to the department on forms and in the time and manner required by the commissioner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paragraph (f) of subdivision one of this section, except that the physician shall report the dollar amount (to the extent of the physician's information and belief) for each judgment, award and settlement and not a level of significance or context.
- 4. Each physician shall periodically report to the department on forms and in the time and manner required by the commissioner any other information as is required by the department for the development of profiles under this section which is not otherwise reasonably obtainable.
- 5. The department shall provide each licensee with a copy of his or her profile prior to dissemination to the public. In the manner and time required by the commissioner, a licensee shall be provided the opportunity to correct factual inaccuracies that appear in the profile. The physician shall be permitted

- 2. 본 조의 어떠한 것도 면허 소지자에 관 한 정보를 수집, 보고, 발행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보건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 하다.
- 3. 전문 의료 과실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 험에 가입한 각 의사는 보건국장이 요구 하는 양식, 시간 및 방법으로 본 조 제(1) 항에 명시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사는 각각의 판단, 판정 및 합의에 대한 금액을 (의사가 가진 정보 및 신념 내에서) 보고해야 하며, 중요도나 문맥은 보고하지 않는다.
- 4. 가입한 각 의사는 보건국장이 요구하 는 양식, 시간 및 방법으로, 달리 합리적 으로 얻을 수 없는 본 조에 의거한 프로 파일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부에서 요구하 는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 5. 보건부는 일반에게 배포하기 전 각 면 허 소지자에게 해당인의 프로파일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국장이 요구하는 방 식 및 시간에, 면허 소지자는 프로파일 상 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의사는 배포될 예정인 프 로파일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하여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to file a concise statement concerning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rofile, which shall be disseminated therewith.

- 6. A physician may elect to have his or her profile omit certain information provided pursuant to paragraphs (1), (m), (n) and (q) of subdivision one of this section. In collecting information for such profiles and disseminating the same, the department shall inform physicians that they may choose not to provide such information required pursuant to paragraphs (l), (m), (n) and (g) of subdivision one of this section.
- 7. A physician who knowingly provides materially inaccurate inform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be guilty of professional misconduct pursuant to section sixty-five hundred thirty of the education law.
- 6. 의사는 본 조 서브섹션 (1) 제(I)항, (m)항, (n)항 및 (q)항에 따라 제공되는 특정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프로 파일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배포함에 있 어, 보건부는 의사에게 본 조 제1조 제(1) 항, (m)항, (n)항 및 (q)항에 따라 요구되 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통 보해야 한다.
- 7. 본 조에 따라 의도적으로 중대하게 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의사는 교육법 제 6530조에 의거하여 직업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2. 캘리포니아주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16 CCR § 1354,5

캘리포니아 규정집

Title 16. Professional and Vocational Regulations

Division 13. Medical Board of California

원문

Chapter 1. Licensing

Article 16. Information Disclosure

§ 1354.5.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The following information, if known, will be disclosed upon request regarding any physician and surgeon licensed in California:

- (a) Current status of a license, issuance and expiration date of a license, medical school of graduation and date of graduation.
- (b) Any public document filed against any physician and surgeon, and any disposition thereof,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cusations, decisions,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interim suspension orders, citations, and public letters of reprimand. Accusations which have been filed and later withdrawn shall be retained in the board's files for a period of one year after the accusation was withdrawn.

§1354.5. 정보 공개 요건.

캘리포니아 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와 관련하여 요청이 있는 경 우, 알려진 것이 있다면 다음 정보를 공개 하다:

번역문

- (a) 면허의 현재 상태, 면허 발급일 및 만 료일, 출신 의대 및 졸업 날짜.
- (b) 기소, 결정, 일시적 금지명령, 임시 정 지명령, 소환장 및 징계관련 공문 등을 포 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사 및 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된 공공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분. 제기된 후 철회된 기소관련 정보는 기소 철회 후 1년 동안 위원회의 파일에 보관된다.

- (c) Medical malpractice judgments in excess of \$30,000 reported to the board on or after January 1, 1993, including the amount of the judgment, the date of the judgment, the court of jurisdiction, the case number, a brief summary of the circumstances as provided by the court, and an appropriate disclaim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 (d) Discipline imposed by another state or the federal government reported to the board on or after January 1, 1991, including the discipline imposed, the date of the discipline, the state where the discipline was imposed, and an appropriate disclaim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 (e) California felony convictions reported to the board on or after January 1, 1991, including the nature of the conviction, the date of conviction, the sentence, if known, the court of jurisdiction, and an appropriate disclaim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 (c) 판결 금액, 판결일, 관할 법원, 사건 번호, 법원이 제공한 상황에 대한 간략한 요약 및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포함하 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면책 조항 을 포함하여, 1993년 1월 1일 또는 이후 에 위원회에 보고된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의료과실 판결
- (d) 징계 내용, 징계일, 징계가 내려진 주, 및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포함하나 이 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면책 조항을 포 함하여, 1991년 1월 1일 또는 이후에 위 원회에 보고된 다른 주 또는 연방정보가 부과한 징계
- (e) 유죄판결의 성격, 유죄 판결 날짜, 판 결, 알려진 것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 및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면책 조항을 포함 하여, 1991년 1월 1일 또는 이후에 위원 회에 보고된 캘리포니아 주의 중범 죄 관 련 유죄판결

public upon request. Additionally, the

board shall include in a physician's

profile comments submitted by the

3 조지아주

Georgia Code § 43-34A-3

원문 번역문 TITLE 43 - PROFESSIONS AND BUSINESSES CHAPTER 34A - PATIENT RIGHT TO KNOW §1354.5. 정보 공개 요건. § 43-34A-3 - Physician profiles; dissemination 캘리포니아 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사 to public; content and maintenance requirements; corrections; judgments 및 외과의사와 관련하여 요청이 있는 경 prior to April 11, 2001; sealed judgments, 우, 알려진 것이 있다면 다음 정보를 공개 arbitration awards, and settlements 하다: prohibited (a) The Georgia Composite Medical Board (a) 조지아 종합의료위원회 (Georgia shall create physician profiles on each Composite Medical Board)는 본 편 제 physician licensed to practice in this 34장에 따라 조지아 주에서 의료행위 면 state under Chapter 34 of this title. 허를 소지한 각 의사에 대해 의사 프로파 일을 작성한다. (b) In creating physician profiles, the (b) 의사 프로파일 작성시, 위원회는 규정 board shall by regulation establish a 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배포를 포함하여 standard form for the collection and 일반에게 해당 데이터를 수집 및 배포하 dissemination of such data to the 기 위한 표준 양식을 제정해야 한다. 이 public, including dissemination on the 정보는 의사, 위원회, 의료 과실 보험회 Internet. The information may be 사, 병원, 의료 및 전문사회 및 기타 적절 gathered from the physician, the board, 한 출처로부터 수집 할 수 있다. 정보는 medical malpractice insurers, hospitals, 요청 시 일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형식 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의사 medical and specialty societies, and other 프로파일에 게시된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 appropriate sources. The information shall be compiled in a form which can 가 제출한 의사의 프로파일 의견을 포함 be disseminated to a member of the 시켜야 한다. 해당 의견은 100 단어를 초

과하지 아니한다.

의사는 수정사항이 의료과실, 병원 직원 특권 또는 징계 조치와 관련이 있는 경우, physician regarding information published in the physician's profile. Such comments shall not exceed 100 words.

The physician shall have 30 days to submit comment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profile or any amended profile if the amendment relates to malpractice, hospital staff privileges, or disciplinary action.

- (c) The physician profil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 (1) The full name of the physician;
- (2) Names of medical schools attended, dates of attendance, and date of graduation;
- (3) The location and dates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
- (4) Specialty board certification, if applicable. The toll-free nu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shall be included to verify current board certification status;
- (5) The fact that a license has been granted by reciprocity under Code Section 43-34-31, if applicable;
- (6) The number of years in practice and locations;
- (7) Current hospital privileges;
- (8) The location of primary practice setting;
- (9) If requested by the physician, identification of any translating services available at the primary practice setting;

프로파일 또는 수정된 프로파일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c) 의사 프로파일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 함되어야 하다:
- (1) 의사의 성명;
- (2) 졸업한 의과 대학의 이름, 출석일 및 졸업 일자;
- (3) 대학원 의학 교육 장소 및 날짜;
- (4) 해당되는 경우 전문위원회 자격증. 현 재의 위원회 자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미국 의학전문위원회 (Board of Medical Specialties)의 무료 전화를 기재해야 한다;
- (5) 해당되는 경우 윤리 강령 제43-34-31 에 의거하여 상호주의에 의해 면허가 부 여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의료 수행 기간 및 장소;
- (7) 현재의 병원 특권;
- (8) 1차 진료 장소;
- (9) 의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차 진료 장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번역 서비스 확

- (10) Participation in the Medicaid program, if applicable;
- (11) Criminal convictions for felonies, irrespective of the pendency or availability of an appeal;
- (12) Felony charges to which a plea of nolo contendere was entered;
- (13) A description of any final, public disciplinary action by a regulatory board and a description of any second or subsequent final private reprimand by a regulatory board. As used in this paragraph, the term "regulatory board" refers to:
- (A) The Georgia Composite Medical Board and its counterpart in any other state; and
- (B) Any state licensing board in Georgia or in any other state;
- (14) A description of any final revocation or any final disciplinary action resulting in any restriction of hospital privileges, either involuntary or by agreement, for reasons related to competence or character in the most recent ten years. No such revocation or restriction taken prior to April 11, 2001, shall be included in the physician's profile;
- restriction of staff privileges at a

- (10)해당되는 경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 여부;
- (11) 항소의 계류 또는 가용성에 관계 없 이, 중죄에 대한 형사 판결;
- (12) 탄원서가 제출 된 중범 죄 혐의;
- (13) 규제위원회에 의한 최종적이고 공개 적인 징계 조치 및 규제위원회에 의한 두 번째 또는 후속 최종 개인 견책에 대한 설명. 본 조항에서 사용된 "규제위원회"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조지아 종합의료위원회 및 다른 주의 규제위원회; 및
- (B) 조지아 주 또는 다른 주에 있는 주 정 부 면허위원회;
- (14) 최근 10년 동안 능력 또는 성격과 관련된 사유로, 자발적이든 또는 비자발 적이든, 병원 특권상의 제한을 초래하는 최종적인 계약 해지 또는 최종 징계 조치 에 대한 설명. 2001년 4월 11일 이전에 취해진 해지 또는 제한은 의사 프로파일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5) Resignation from or nonrenewal (15) 최근 10년 동안 능력 또는 성격과 of medical staff membership or the 관련된 보류 징계 조치를 해결한 상태에 서 병원이 취한 의료 구성원 자격 갱신

hospital taken in lieu of or in settlement of pending disciplinary action related to competence or character in the most recent ten years. No such action taken prior to April 11, 2001, shall be included in the physician's profile;

(16) Final medical malpractice court medical malpractice judgments or arbitration awards entered on or after April 11, 2001, in which payment in excess of \$100,000,00 is awarded against the physician to the complaining party. No such judgments or awards prior to April 11, 2001, shall be included in any physician's profile. No such medical malpractice court judgments or medical malpractice arbitration awards which occurred more than ten years prior to the date of the profile shall be included in any physician profile;

(17) (A) Medical malpractice settlements, including the monetary amount of each such settlement, in which payment in excess of \$300,000,00 is made by or on behalf of and attributable to the physician to the complaining party. No such settlement occurring prior to April 11, 2001, shall be included in any physician profile. No such settlement which occurred more than ten years prior to the date of the profile shall be included in any physician profile.

거절 또는 직원 특권의 제한. 2001년 4월 11일 이전에 취한 조치는 의사 프로파일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6) 2001년 4월 11일 또는 그 이후에 내려진 최종 의료 과실관련 법원 판결 또는 의료 과실 중재 판정에서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사에게 부과된 경우. 2001년 4월 11일 이전에 내려진 판결이나 판정은 의사 프로파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프로파일 날짜로부터 10여전 전에 발생한 의료 과실관련 법원 판결이나 의료과실 중재 판정은 의사 프로파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7) (A) 각 합의에 대한 금전을 포함하여 의료 과실 합의에서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30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사에게 부과된 경우. 2001년 4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합의는 의사 프로파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프로파일 작성일로부터 10여년 전에 발생한 합의는 의사 프로파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B) Medical malpractice settlements. including the monetary amount of each such settlement, if three medical malpractice settlements have been made by or on behalf of and attributable to the physician to the complaining party and payment in excess of \$100,000.00 has been made by or on behalf of and attributable to the physician in any one or more of such settlements. No such settlement occurring prior to April 11, 2001, shall be included in any physician profile nor shall any such settlement be include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ree medical malpractice settlements have been made by or on behalf of and attributable to the physician

No such settlement which occurred more than ten years prior to the date of the profile shall be included in any physician profile nor shall any such settlement be include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ree medical malpractice settlements have been made by or on behalf of and attributable to the physician

(C) All medical malpractice settlements, including the monetary amount of each such settlement, if four or more medical malpractice settlements have been made by or on behalf of and attributable to the physician to the

(B) 합의에 대한 금전을 포함하여 의료 과실 합의가 이루어지고, 의사에 의해. 또 는 대신하여 3건의 합의가 진행되고 의사 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불만을 제기한 당 사자에게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1건 이상의 합의에서 의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001년 4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합의는, 의사 프 로파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3건의 의 료 과실 합의가 의사에 의해 또는 대신하 여 이루어지고 의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다.

프로파일 날짜로부터 10여년 전에 발생한 합의는 의사 프로파일에 포함시키지 아니 하며, 3건의 의료 과실 합의가 의사에 의 해 또는 대신하여 이루어지고 의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 으로 포함되지 아니한다.

(C) 의사에 의한 또는 대신하여 지불된 또는 의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지불 금 액에 관계없이, 합의에 대한 금전을 포함 하여 의료 과실 합의가 이루어지고. 의사 에 의해. 또는 대신하여 4건의 합의가 진 행되고 의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D) Any disclosure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statement:

attributable to the physician

"Settlement of a claim may occur for a variety of reasons which do not necessarily reflect negatively on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r conduct of the physician. A payment in settlement of a medical malpractice action or claim should not be construed as creating a presumption that medical malpractice has occurred.";

2001 년 4 월 11 일 이전에 발생한 합의는 의사 프로파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4건의 의료 과실 합의가 의사에 의해 또는 대신하여 이루어지고 의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다. 프로파일 날짜로부터 10여년 전에 발생한 합의는 의사 프로파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4건의 의료과실 합의가 의사에 의해 또는 대신하여이루어지고 의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다.

(D) 본 조항에 따른 모든 공개에는 다음 진술이 수반되어야 한다.

"청구에 대한 합의는 의사의 전문적 역량이나 행동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있습니다. 의료 과실 소송 또는 청구에대한 합의금 지불은 의료 과실이 발생했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 (18) Pending malpractice claims shall not be disclosed;
- (19) The board may, in its discretion, include additional statements describing the experience or pattern of awards, judgments, or settlements of the physician. Information concerning paid medical malpractice claims may be put in context by comparing an individual licensee's medical malpractice judgments. awards, or settlements to the experience of other physicians within the same specialty;
- (20) Any complaint or grievance filed with the board and upon which the board took disciplinary action,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the complaint and the resolution; and
- (21) All violations of this chapter.
- (d) The physician profile may include information relating to:
- (1) Appointment to medical school faculties within the most recent ten years;
- (2) Articles in professional publications and journals; and
- (3) Professional or community service membership, activities, and awards.
- (e) The physician profiles shall be updated by the board as required in this subsection:

- (18) 계류중인 의료 과실 청구는 공개하 지 아니하다;
- (19)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의사의 중재 판정, 판결 또는 합의 경험이나 유형을 설 명하는 추가 진술을 포함 할 수 있다. 지 불이 이루어진 의료과실 청구에 관한 정 보는 개별 면허 소지자의 의료 과실 판결, 판정 또는 합의를 동일한 전문 분야 내 다른 의사의 경험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다.
- (20) 위원회에 제기된 불평 또는 불만 사 항 및 불만 또는 해결의 성격에 대한 설 명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취한 조치; 및
- (21) 본 장에 대한 모든 위반사항.
- (d) 의사 프로파일은 다음과 관련된 정보 를 포함 할 수 있다:
- (1) 최근 10년 이내에 의과 대학 학부에 임명된 사실;
- (2) 전문 간행물 및 저널에 간행된 논문; 및
- (3) 전문분야 또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 회원자격, 활동 및 수상.
- (e) 의사 프로파일은 본 조항에서 요구하 는 대로 위원회가 업데이트 한다.

- (1) The profile items listed in paragraphs (11) through (17) of subsection (c) of this Code section inclusive shall be reported to the board by the physician involved within ten days of the judgment, award, settlement, revocation, resignation, or disciplinary action, and the board shall update the physician's profile with such changes within ten days of receipt of such information; and
- (2) All other changes to the physician profile shall be reported by the physician to the board within 30 days of the change, and the board shall verify and update the physician profile with such new information within 15 days
- (f) The physician may request a copy of the profile and may submit corrections to the board. The board shall verify corrections and make changes to the profile within five business days of receipt of the corrected information by the board. The physician may request post correction publication by the board to whomever received the profile containing the error.
- (g)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c) of this Code section, no final medical malpractice court judgment, medical malpractice arbitration award, or medical malpractice settlement which was awarded prior to April 11, 2001,

- (1) 본 법의 서브섹션 (c)의 제(11)항 내 지 제 (17)항에 열거된 프로파일 항목은 판결, 판정, 합의, 취소, 사임 또는 징계조 치가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관련 의사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 당 변경 사항을 의사 프로파일에 반영해 야 한다; 및
- (2) 의사 프로파일에 대한 다른 모든 변경 사항은 변경 후 30일 이내에 의사가 위원 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15일 이내 에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의사 프로파 일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 (f) 의사는 프로파일 사본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위원회에 수정 사항을 제출할 수 있 다. 위원회는 수정 사항을 확인하고 수정 한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프로파일을 변경해야 한다. 의사는 오류 가 포함된 프로파일을 수령한 사람에 대 해 위원회가 사후수정 공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g) 본 법의 서브섹션(c)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2001년 4월 11일 이전에 내려지고, 2001년 4월 11일 이전 법원 명령에 의해 봉인이 된 최종 의료 과실 법원 판결, 의 료 과실 중재 판정 또는 의료 과실 합의 는 본 법 서브섹션 (c)에 의거하여 공개할

and which was sealed by order of a court prior to April 11, 2001, shall be required to be disclosed pursuant to subsection (c) of this Code section. No final medical malpractice court judgment, medical malpractice arbitration award, or medical malpractice settlement which is awarded on or after April 11, 2001, shall be confidential or sealed with regard to information which is needed to comply with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필요가 없다. 2001년 4월 11일 또는 그 이후에 내려진 최종 의료 과실 법원 판결, 의료 과실 중재 판정 또는 의료 과실 합 의는 본 장의 목적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와 관련하여 기밀로 취급되거나 또는 봉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뉴저지주

New Jersey Health Care Consumer Information Act

원문 번역문 1. This act shall be known and may be 1. 본 법안은 "뉴저지 의료 소비자 정보 cited as the "New Jersey Health Care 법"으로 공포 및 인용된다. Consumer Information Act." 2. a. The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2. a. 주정부 의료감독 위원회와 협의하 in the Department of Law and Public 여, 법 공공안전부의 소비자 담당 부서는 Safety, in consultation with the State 본 법에 따라 각 의사 및 발 전문의의 프 Board of Medical Examiners, shall collect 로파일을 작성하기 위하여 뉴저지 주에서 and maintain information concerning all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사 및 발 전문의에 Physicians and podiatrists licensed in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해야 한다. 프 the State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로파일은 전자 및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 profile of each physician and podiatrist 해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해당 부서 pursuant to this act. The profiles shall 는 의사 또는 발 전문의 프로파일 사본 획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득 및 해당 프로파일에 관한 문의를 위해 필요한 무료 전화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electronic and other appropriate means, at no charge to the public. The division shall establish a toll-free telephone number for members of the public to contact the division to obtain a paper copy of a physician or podiatrist profile and to make other inquiries about the profiles. b. A physician or podiatrist shall be b. 의사 또는 발 전문의는 본 법 제3 항에 required to provide the board or 명시된 바와 같이 프로파일을 완성하기 division or its designated agent with 위해 필요한 정보를 위원회, 해당 부서 또 any information necessary to complete 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the profile as provided in section 3 of

this act.

- c. The board may request any additional information it deems necessary to complete the profiles on the biennial license renewal form submitted by physicians and podiatrists.
- d. The board shall provide to the division or its designated agent any information required pursuant to this act that is available to the board concerning a physician or podiatrist, for the purpose of creating the physician and podiatrist profiles.
- 3. a. The following information shall be included for each profile of a physician or podiatrist:
- (1) Name of all medical schools attended and dates of graduation;
- (2) Graduate medical education, including all internships, residencies and fellowships;
- (3) Year first licensed;
- (4) Year first licensed in New Jersey;
- (5) Location of the physician's or podiatrist's office practice site or sites, as applicable;
- (6) A description of any criminal convictions for crimes of the first, second, third or fourth degree within the most recent 10 years.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a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convicted of a crime if the individual pleaded guilty or was found or adjudged guilty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he description

- c. 위원회는 의사 및 발 전문의가 제출한 2년마다 진행하는 면허 갱신 양식에 대한 프로파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d. 위원회는 의사 또는 발 전문의 프로파 일을 작성하기 위해 의사 또는 발 전문의 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본 법에 따른 모든 정보를 해당 부서 또는 지정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3. a. 의사 또는 발 전문의의 각 프로파일 에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 (1) 출신 의과 대학의 이름 및 졸업 날짜;
- (2) 모든 인턴과정, 레지던트 및 펠로우십 (fellowship)을 포함한 대학원 의학 교육;
- (3)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한 해;
- (4)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한 해;
- (5) 해당되는 경우 의사 또는 발 전문의 진료소 위치;
- (6) 최근 10년 이내에 제1, 제2, 제3 또는 제4급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에 대한 설명. 본 조항의 목적 상, 개인이 유죄를 인정하였거나 관할 법원에서 유죄 를 선고한 경우 범죄에 대한 유죄로 간주 한다. 형사 사건 유죄판결에 관한 설명에 는 소멸된 판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 죄판결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의 진술을 포함한다: "본 조항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of criminal convictions shall not include any convictions that have been expunged. The following statement shall be included with the information about criminal convictions: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section may not be comprehensive. Courts in New Jersey are required by law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criminal convictions to the State Board of Medical Examiners.";

포괄적 정보가 아니며, 뉴저지 법원은 법 에 따라 주 의료감독위원회에 형사사건 유죄판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7) A description of any final board disciplinary actions within the most recent 10 years, except that any such disciplinary action that is being appealed shall be identified;
- (7) 항소중인 징계 조치에 대해 밝혀진 경 우를 제외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최종 위원회 징계 조치에 대한 설명;
- (8) A description of any final disciplinary actions by appropriate licensing boards in other states within the most recent 10 years, except that any such disciplinary action that is being appealed shall be identified. The following statement shall be included with the information about disciplinary actions in other states: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section may not be comprehensive. The State Board of Medical Examiners receives information about disciplinary actions in other states from physicians themselves and outside sources.";
- (8) 항소중인 징계 조치에 대해 밝혀진 경 우를 제외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주에서 적절한 면허 위원회가 취한 최종 징계 조치에 대한 설명. 다른 주에서의 징계 조치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포함한다: "본 조항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포괄적인 정보가 아니며, 주 의료 감독위원회는 의사 및 외부 출처로부터 다른 주에서 취해진 징계 조치에 관한 정 보를 수령하였습니다.";

- (9) A description of: the revocation or involuntary restriction of privileges at a health care facility for reasons related
- (9) 다음에 대한 설명: 의사의 역량, 위법 행위 또는 장애와 관련된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한 후 의료시설 관리기관 또

to the practitioner's competence or misconduct or impairment taken by a health care facility's governing body or any other official of the health care facility after procedural due process has been afforded; the resignation from or nonrenewal of medical staff membership at the health care facility for reasons related to the practitioner's competence or misconduct or impairment; or the restriction of privileges at a health care facility taken in lieu of or in settlement of a pending disciplinary case related to the practitioner's competence or misconduct or impairment. Only those cases that have occurred within the most recent 10 years and that were reported by the health care facility pursuant to section 1 of P.L.1983, c.247 (C. 26:2H-12.2) shall be included in the profile; and

(10) All medical malpractice court judgments and all medical malpractice arbitration awards reported to the board, in which a payment has been awarded to the complaining party during the most recent five years, and all settlements of medical malpractice claims reported to the board, in which a payment is made to the complaining party within the most recent five years, as follows:

(a) Pending medical malpractice claims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profile and

는 기타 의료시설 관련 공직자가 취한 의 료 시설에서의 특권 철회 또는 비 자발적 제한; 의사의 역량, 위법 행위 또는 장애 와 관련된 이유로, 의료시설에서 의료 구 성원 자격을 사임하거나 갱신을 거부한 사실; 또는 의사의 역량, 위법 행위 또는 장애와 관련하여 계류 중인 징계사건의 합의 또는 이를 대신하여 취해진 의료시 설의 특권 제한. 최근 10년 이내에 발생 한 사례 및 P.L.1983, c. 247 (C.26: 2H-12.2) 제1항에 따라 의료 시설에서 보 고한 사례만을 프로파일에 포함해야 한 다; 및

(10) 다음과 같이, 최근 5년 동안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지불이 이루어진 모든 의료 과실 판결 및 의료 과실 중재 판정 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및 최근 5년 이내에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지불이 이루어진, 위원회에 보고된 의료과실 청 구에 대한 합의

(a) 계류중인 의료 과실 청구는 프로파일 에 포함하지 않으며, 계류중인 의료 과실 information on pending medical malpractice claims shall not be disclosed to the public;

- (b) A medical malpractice judgment that is being appealed shall be so identified;
- (c) The context in which the payment of a medical malpractice claim occurs shall be identified by categorizing the number of judgments, arbitration awards and settlements against the physician or podiatrist into three graduated categories: average, above average and below average number of judgments, arbitration awards and settlements. These groupings shall be arrived at by comparing the number of an individual physician's or podiatrist's medical malpractice judgments, arbitration awards and settlements to the Experience of other physicians or podiatrists within the same speciality. In addition to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 physician or podiatrist, an insurer or insurance association authorized to issue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 in the State shall, at the request of the division, provide data and information necessary to effectuate this subparagraph; and
- (d) The following statement shall be included wIth the information concerning medical malpractice judgments, arbitration awards and settlements: "Settlement of

청구에 대한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다.

- (b) 항소중인 의료 과실 판결은 사실대로 확인한다;
- (c) 의료 과실 청구에 대한 지불이 발생한 상황은 의사 또는 발 전문의에 대한 판결. 중재 판정 및 합의의 수를 평균, 평균 이 상, 평균 미만 등 3가지로 구별하여 분류 한다. 이러한 분류는 개별 의사 또는 발 전문의의 의료 과실 판결, 중재 판정 및 합의를 동일한 전문 분야의 다른 의사 또 는 발 전문의 경험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다. 의사 또는 발 전문의가 제공한 정 보 외에, 뉴저지 주에서 의료 과실 책임 보험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보험 사 또는 보험협회는,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조항의 효력 발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 의료 과실 판결, 중재 판정 및 합의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한 다: "청구 합의 및 특히 달러로 표시된 합 의 금액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a claim and, in particular, the dollar amount of the settlement may occur for a variety of reasons, which do not necessarily reflect negatively on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r conduct of the physician (or podiatrist). A payment in settlement of a medical malpractice action or claim should not be construed as creating a presumption that medical malpractice has occurred."

b. If requested by a physician or podiatrist, the following information shall be included in a physician's or podiatrist's profile:

- (1) Names of the hospitals where the physician or podiatrist has privileges;
- (2) Appointments of the physician or podiatrist to medical school faculties within the most recent 10 years;
- (3) Information regarding any board certification granted by a specialty board or other certifying entity recognized by the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the 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 or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or by any other national professional organization that has been demonstrated to have comparable standards;
- (4) Information regarding any translating services that may be available at the physician's or podiatrist's office practice

있습니다. 의사 (또는 발 전문의)의 전문 역량 또는 행위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의료 과실 소송 또는 청구 합의에 대한 지불은 의료 과실 이 발생했었다는 사실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의사 또는 발 전문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발 전문의 프로파일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의사 또는 발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 의 이름;
- (2) 최근 10년 이내 의과 대학 학부에 의 사 또는 발 전문의로 임명되었는지 여부;
- (3) 미국 의학전문위원회, 미국 정골 의학 협회 또는 미국 발 전문 의학위원회 (ABPM)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을 가진 전문기관이 인정한 전문위원회 또는 기타 인증 기관이 부여한 자격증 정보;

(4) 의사 또는 발 전문의의 진료소 또는 사이트 또는 의사 또는 발 전문의가 사용 하는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site or sites, as applicable, or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that are spoken by the physician or podiatrist;

- (5) Information regarding whether the physician or podiatrist participates in the Medicaid program or accepts assignment under the Medicare program;
- (6) Information regarding the medical insurance plans in which the physician or podiatrist is a participating provider;
- (7) Information concerning the hours during which the physician or podiatrist conducts his practice; and
- (8) Information concerning accessibility of the practice site or sites, as applica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following disclaimer shall be included with the information supplied by the physician or podiatrist pursuant to this subsection: "This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by the physician (or podiatrist) but has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by the State Board of Medical Examiners or the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If the physician or podiatrist includes information regarding medical insurance plans in which the practitioner is a participating provider, the following disclaimer shall be included with that information: "This information may be subject to change. Contact your health 번역 서비스에 관한 정보;

- (5) 의사 또는 발 전문의가 메디케이드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지 또는 메디케어 프로 그램에 따른 약정을 수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
- (6) 의사 또는 발 전문의가 참여 의료 제 공자인 의료 보험 계획에 관한 정보;
- (7) 의사 또는 발 전문의의 진료 시간에 관한 정보; 및
- (8)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 는 진료소 또는 사이트에 관한 관한 정보.

다음의 면책 조항은 본 서브섹션에 따라 의사 또는 발 전문의가 제공하는 정보에 포함된다

"이 정보는 의사 (또는 발 전문의)가 제공 한 것이나, 주 의료감독위원회 또는 소비 자 담당부서에 의한 독립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의사 또는 발 전문의가 의료전문가가 참 여 중인 의료보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는 경우, 다음의 면책조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이 정보는 변경 될 수 있습니 다. 의사 (또는 발 전문의) 현재 의료계획 에 참여 중이라면, 관련 혜택은 의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enefits plan to verify if the physician (or podiatrist) currently participates in the plan."

- c. Before a profile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each physician or podiatrist shall be provided with a copy of his profile. The physician or podiatrist shall be given 30 calendar days to correct a factual inaccuracy that may appear in the profile and so advise the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or its designated agent; however, upon receipt of a written request that the division or its designated agent deems reasonable, the physician or podiatrist may be granted an extension of up to 15 calendar days to correct a factual inaccuracy and so advise the division or its designated agent.
- d. If new information or a change in existing information is received by the division concerning a physician or podiatrist, the physician or podiatrist shall be provided with a copy of the proposed revision and shall be given 30 calendar days to correct a factual inaccuracy and to return the corrected information to the division or its designated agent.
- The profile and any revisions thereto shall not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until after the review period provided for in this section has lapsed.

c. 프로파일을 일반에게 공개하기 전, 의 사 또는 발 전문의에게 해당인의 프로파 일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담당부 서 또는 지정 대리인은 의사 또는 발 전 문의로 하여금 프로파일 상의 사실적 오 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30일 간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또는 지 정된 대리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서 면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또는 지 정 대리인은 의사 또는 발 전문의로 하여 금 부정확한 사실을 수정할 수 있도록 최 대 15 일의 기간을 연장해 준다.

d. 담당부서가 의사 또는 발 전문의에 대 해 새로운 정보를 수령하거나 또는 기존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의사 또는 발 전문의 에게 제안된 개정안의 사본을 제공 해야 하며, 30일 간의 오류 수정기간 경과 후 수정된 정보를 담당 부서 또는 지정된 대 리인에게 반송하도록 한다

e. 본 항에서 규정한 검토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프로파일 및 그 수정안은 일반에 게 공개하지 않는다.

5. 텍사즈주

Georgia Code § 43-34A-3

원문	번역문					
TEXAS MEDICAL BOARD BOARD RULES Texas Administrative Code, Title 22, Part 9 Chapter 173. Physician Profiles						
§173.1. Profile Contents. (a) The Texas Medical Board (the "board") shall develop and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a comprehensive profile of each licensed physician electronically via the Internet or in paper format upon request.	\$173.1. 프로파일 내용. (a) 텍사스 의료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또는 문서 형식 을 통해 각 면허를 소지한 의사에 대한 포괄적인 프로파일을 개발 및 공개한다.					
(b) The profile of each licensed physician shall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listed in paragraphs (1)-(28) of this subsection:						
(1) full name as the physician is licensed;	(1)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성명;					
(2) place of birth if the physician requests that it be included in the	(2) 의사가 요청할 경우 프로파일에 포함 된 출생지;					
physician's profile; (3) year of birth; (4) gender; (5) ethnic origin if the physician requests that it be included in the physician's profile;	(3) 출생 년도;(4) 성별;(5) 의사가 요청할 경우 프로파일에 포함 된 의사의 인종;					
(6) name of each medical school attended and the dates of: (A) graduation; or (B) Fifth Pathway designation and	(A) 졸업일자; 또는					

completion of the Fifth Pathway Program;

- (7) a description of all graduate medic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r Canada, including:
- (A) beginning and ending dates;
- (B) program name;
- (C) city and state of program;
- (D) type of training (internship, residency or fellowship); and
- (E) specialty of program;
- (8) any specialty certification held by the physician and issued by a board that is a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or the Bureau of Osteopathic Specialists;
- (9) primary and secondary specialties practiced, as designated by the physician;
- (10) the number of years the physician has actively practiced medicine in:
- (A) the United States or Canada; and
- (B) Texas:
- (11) the original date of issuance of the physician's Texas medical license; (12) the expiration date of the physician's registration permit;
- (13) the physician's current registration, disciplinary and licensure statuses;
- (14) the name and city of each hospital in Texas in which the physician has privileges;

램 수료 날짜

- (7)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미국 또는 캐 나다 내 모든 대학원 의학 교육에 관한 설명:
- (A) 시작 및 종료 날짜;
- (B)프로그램 이름;
- (C)프로그램 진행 도시 및 주;
- (D)훈련 유형 (인턴십, 레지던트, 또는 펠 로우십); 및
- (E)프로그램 전문분야;
- (8) 의사가 보유하고 미국 의학전문위원 회 (ABMS) 또는 정골요법 전문위원회가 발행한 전문 자격증;
- (9) 의사가 지정한 1차 및 2차 전문 과정;
- 10) 다음 지역에서 의사가 적극적으로 의 료업무를 수행한 년 수:
- (A) 미국 또는 캐나다; 및
- (B) 텍사스 주;
- (11) 의사가 텍사스 주 의료 면허를 발급 받은 날짜;
- (12)의사의 등록 허가 유효 기간;
- (13)의사의 현재 등록, 징계 및 면허 상태;
- (14)의사가 특권을 가진 텍사스의 각 병 원 이름 및 도시;

- (15) the physician's primary practice location (street address, city, state and zip code);
- (16) the physician's mailing address (street or P.O. Box address, city, state, and zip code), if the physician does not have a primary practice location;
- (17) the type of language translating services, including translating services for a person with impairment of hearing, that the physician provides at the physician's primary practice location;
- (18) whether the physician participates in the Medicaid program;
- (19) whether the physician's patient service areas are accessible to disabled persons, as defined by federal law;
- (20) a description of any conviction for an offense constituting a felony, a Class A or Class B misdemeanor, or a Class C misdemeanor involving moral turpitude;
- (21) a description of any charges reported to the board to which the physician has pleaded no contest, for which the physician is the subject of deferred adjudication or pretrial diversion, or in which sufficient facts of guilt were found and the matter was continue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 (15) 의사의 1차 진료 장소 (도로 주소, 도시, 주 및 우편 번호);
- (16) 1차 진료 장소가 없는 경우, 의사의 우편 주소 (도로 또는 사서함 주소, 도시, 주 및 우편 번호);
- (17) 의사의 1차 진료 장소에서 제공하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번역 서비스를 포함 하여 언어 번역 서비스 유형;
- (18) 의사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 여부;
- (19) 의사 진료 영역이 연방법에 정의된 대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곳인지 여부;
- (20) 중범죄, A급 또는 B급 경범죄, 또는 파렴치한 범죄와 관련 있는 C급 경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설명;
- (21) 의사가 항변을 하지 않았으나, 판결이 연기되었거나, 예비 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충분한 유죄 사실이 있어 관할 법원이 계속 중인 사안으로 위원회에 보고된 혐의에 대한 설명;

- (22) a description of any public board action against the physician;
- (23) a description of any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hysician by a medical licensing board of another state;
- (24) a description of the final resolution taken by the board on medical malpractice claims or complaints required to be opened by the board under the Medical Practice Act (the "Act"), Tex. Occ. Code Ann. §164,201 unless the investigation was resolved more than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the update and no action was taken against the physician's license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 (25) a description of any formal complaint issued by the board's staff against the physician and initiated and filed with the State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under §164,005 of the Act and the status of the complaint;
- (26) a description of a maximum of five awards, honors, publications or academic appointments submitted by the physician, each no longer than 120 characters;
- (27) a description of any medical malpractice claim against the physician, not including a description of any offers by the physician to settle the

- (22) 의사에 대한 공공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설명;
- (23) 다른 주의 면허위원회가 해당 의사 에게 부과한 징계 조치에 대한 설명;
- (24) 업데이트 날짜 5년 전에 수사가 해 결되었거나 수사 결과 의사의 면허에 대 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를 제외하 고, Tex. Occ. Code Ann §164.201 의료 행위법 (이하 본 "법")에 따라 위원회가 진행하는 의료 과실 청구 또는 불만 사항 에 대해 위원회가 취한 최종 결정에 대한 설명;
- (25) 법 §164.005에 의거하여 의사를 상 대로 위원회 직원이 제기하고, 주 행정 심 의회 사무실에서 개시된 정식 불만 사항 에 대한 설명 및 불만 사항의 상태;
- (26) 의사가 제출한 최대 5 개의 상장, 명 예, 출판물 또는 학문 분야 임명에 대한 설 명으로, 각각은 120자를 초과할 수 없다.
- (27)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제안 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으나, 의사에게 책 임이 있고, 배심원이 청구인에 대한 배상 금을 인정하고, 해당 배상금은 최종적인

claim, for which the physician was found liable, a jury awarded monetary damages to the claimant, and the award has been determined to be final and not subject to further appeal; and

(28) whether the physician provides utilization review services for an insurance company in connection with health care services rendered by a group health plan and the name of the insurance company or companies. This does not include providing utilization review in relation to worker's compensation claims.

§173.2. Profile Update and Correction Form

(a) The board shall develop a Profile Update and Correction Form (the "Form") which allows for corrections and/or updates to the profile information to be made by the physician. The physician must submit all changes to profile information upon this Form, or indicate on the Form that no changes are necessary. The Form shall contain the date the information will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and will allow the physician to request a copy of the physician's profile. Upon such request, and when the profile information has been updated, the board shall provide a copy to the physician. The Form will

것으로 더 이상의 항소가 없는 사건에서. 의사를 상대로 한 의료 과실 청구에 대한 설명; 및

(28) 단체 의료계획 및 보험회사 또는 회 사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의사가 보험 회사 이용 가능여 부를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 부. 근로자의 산재보상 청구와 관련된 활 용여부 검토를 포함하지 않는다.

§173.2. 프로파일 업데이트 및 수정 양식

(a) 위원회는 의사가 작성하는 프로파일 정보 수정 및/또는 업데이트를 허용하는 프로파일 업데이트 및 수정 양식 (이하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의사는 해당 양 식 프로파일 정보의 모든 변경 사항을 제 출하거나 변경이 필요 없음을 양식에 명 시해야 한다. 본 양식에는 정보가 공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는 프로파 일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이 있고, 프로파일 정보가 업데이트된 경우, 위원회는 의사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 다. 본 양식은 인쇄본 형식으로 또는 인 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be made available in hard copy and on the Internet.

- (b) Compliance with the request for information from the board is mandatory. Failure to return the completed Form to the board shall be considered noncompliance. Non-compliance shall result in nonrenewal of the physician's license until such time as the physician provides the requested information.
- (c) Submission of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or omission of required information by the physician shall be considered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 (d) All data contained in the profile shall indicate the source of the data and the last update date.

§173.3. Physician-Initiated Updates

- (a) Physicians are required to attest as to whether or not the physician's profile information is correct at the time of the physician's registration and to initiate correction of any incorrect information.
- (b) Physicians should maintain current profile information by submitting updates and corrections as changes occur.
- (c) The physician shall make necessary corrections and updates by submitting

- (b) 위원회의 정보 요청 준수는 의무이다. 완성된 양식을 위원회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요청한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의사의 면허가 갱 신되지 않는다.
- (c) 잘못된 정보 또는 오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출 또는 필수 정보 누락은 징계 조치의 근거로 간주된다
- (d) 프로파일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는 데 이터의 출처 및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표 시해야 한다.
- §173.3. 의사에 의한 업데이트
- (a) 의사는 등록 시 의사 정보가 올바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를 시정해야 하다.
- (b) 의사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최신 정보 및 수정 사항을 제출하여 최근 의 프로파일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 (c) 의사는 프로파일 업데이트 및 수정 양 식을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등록한

- a profile update and correction form or by submitting it online if completing the registration via the internet.
- (d) A physician shall report the following to the Board within 30 days after the event:
- (1) Any change of mailing or practice address:
- (2) Incarceration in a state or federal penitentiary;
- (3) An initial conviction, final conviction, or placement on deferred adjudication, community supervision, or deferred disposition for:
- (A) a felony;
- (B) a misdemeanor that directly relates to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 physician licensed by the board;
- (C) a misdemeanor involving moral turpitude;
- (D) a misdemeanor under Chapter 22, Penal Code (relating to assaultive offenses), other than a misdemeanor punishable by fine only;
- (E) a misdemeanor on conviction of which a defendant is required to register as a sex offender under Chapter 62. Code of Criminal Procedure;
- Code (relating to the violation of a protective order or a magistrate's order); or

- 경우 해당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수정 및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한다.
- (d) 의사는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다 음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우편 또는 진료 주소 변경;
- (2)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의 감금;
- (3) 다음 혐의에 대한 지연 판결, 보호관 찰 또는 지연 처분 중인 최초 유죄 판결, 최종 유죄 판결 또는 상태:
- (A) 중범죄;
- (B) 위원회가 발급한 면허를 소지한 의사 의 의무 및 책임과 직접 관련된 경범죄;
- (C) 파렴치한 죄와 관련된 경범죄;
- (D) 벌금 처벌 대상인 경범죄 외에, 형법 제22장 (폭행죄 관련)에 따른 경범죄
- (E) 형사소송법 제62장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범죄;
- (F) a misdemeanor under §25.07, Penal | (F) 형법 §25.07 (보호 명령 또는 치안 판 사의 명령 위반과 관련)에 따른 경범죄; 또는

- (G) a misdemeanor under §25.071. Penal Code (relating to the violation of a protective order preventing offenses caused by bias or prejudice); or
- (4) An initial finding by the trier of fact of guilt of a felony under:
- (A) Chapter 481 or 483, Health and Safety Code (relating to offenses involving controlled substances and dangerous drugs);
- (B) Section 485.033, Health and Safety Code (relating to offenses involving inhalant paraphernalia); or
- (C) the 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0 (21 U.S.C. §801 et seq.).
- §173.4. Updates to the Physician's Profile Due to Board Action
- (a) When the board takes disciplinary action or files a formal complaint at the State Office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pursuant to Section 164,005 of the Act against a physician, such action shall be noted on the physician's profile not later than the 10th working day after the board's action occurs and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 (b) All records relating to formal complaints that have been posted on a physician's profile shall be removed if: (1) the complaint was dismissed more than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the update; and

- (G) 형법 25.071에 따른 경범죄 (편견 또 는 선입견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는 보호 명령 위반과 관련); 또는
- (4) 다음에 의거하여 재판관이 중범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근거
- (A) 건강 안전법 제481장 또는 제483장 (규제 물질 및 위험 약물과 관련된 범죄 와 관련);
- (B) 건강 안전법 제485.033항 (흡입 형 마약 관련 위반과 관련); 또는
- (C) 1970년의 포괄적 약물 남용 예방 및 통제법 (21 U.S.C. §801 이하 참조).
- §173.4. 위원회 조치로 인한 의사 프로파 일 업데이트.
- (a) 위원회가 법 제 164,005 항에 따라 주 행정절차 사무소에서 의사를 상대로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 는 경우, 해당 조치는 위원회의 조치 후 10 근무일 이전에 의사 프로파일에 명시 되어야 하며,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b) 의사 프로파일에 게시된 공식적인 불 만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다음의 경우 삭 제하다:
- (1) 불만 사항이 업데이트 5년 전에 기각 된 경우; 및

- (2) the complaint was dismissed as baseless, unfounded, or not supported by sufficient evidence that a violation occurred, or no action was taken against the physician's license as a result of the complaint,
- §173.5. Updates to the Physician's Profile Due to Information Received by a Third Party.
- (a) When the board is notified by a third party of a change in profile information for a physician, the board shall send a copy of the Form to the physician with the changes noted. The physician shall have one month in which to correct factual errors or dispute the information,
- (b) Amendments to a physician's profile shall be made by the board when:
- (1) the board receives information from non-governmental third-parties that has been verified by the board and contradicts information reported on a physician's profile;
- (2) the board receives information from state or federal governmental authorities regarding criminal convictions described in §173.1(b)(20) and (21) of this title (relating to Profile Contents); (3) the board determines that information provided on a physician's profile would violate state or federal confidentiality

- (2) 불만 사항에 대한 근거가 없거나, 위반이 발생했거나 불만의 결과로 의사 면허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173.5. 제3자로부터 수령한 정보로 인한 의사 프로파일 업데이트
- (a) 위원회가 제3자로부터 의사 프로파일 정보 변경에 대해 통지를 받은 경우, 위원 회는 변경된 사항과 함께 의사에게 양식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의사는 사실 상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의를 제기 할 수 있 는 1 달의 시간을 가진다.
- (b) 다음의 경우 위원회는 의사 프로파일을 수정해야 한다:
- (1) 위원회가 확인한 비 정부 제 3자로부 터 정보를 입수한 후 해당 정보가 의사 프로파일에 보고된 정보와 모순된 경우;
- (2) 위원회가 본 제§173 (b) (20)편 및 (21)편 (프로파일 내용과 관련)에 명시된 형사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경우;
- (3) 위원회가 의사 프로파일에 제공된 정보가 주 또는 연방 기밀유지 법을 위반할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laws; or

(4) the board otherwise determines that information provided on a physician's profile is false or misleading.

§173.7. Corrections and the Dispute Process.

- (a) If the physician wishes to make corrections or dispute the proposed profile information updated under any section of this chapter, the procedures in this section shall apply.
- (b) If the board receives the Form from the physician without corrections to the profile information, the profile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as is.
- (c) If the board receives the Form from the physician and the physician has indicated corrections to the information on the Form, the board shall review the proposed corrections.
- (d) If the board determines that the physician's corrections are satisfactory, the board shall update the profile information and make the profile available to the public.
- (e) If the board determines that the physician's corrections are unsatisfactory, the board shall so notify the physician, along with a presentation of the information in a format satisfactory to the board, and instructions of the

(4) 위원회가 의사 프로파일에 제공된 정 보가 허위 또는 오도 가능성이 있다고 달 리 판단하는 경우.

§173.7. 수정 및 이의제기 절차

- (a) 의사가 이 장의 조항에 따라 업데이트 된 프로파일 정보를 수정하거나 이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항 의 절차를 적용한다.
- (b) 위원회가 의사 프로파일을 수정하지 않고 의사로부터 양식을 수령한 경우, 해 당 프로파일은 그대로 일반에게 공개된다.
- (c) 위원회가 의사로부터 양식을 수령하 고 의사가 양식 상 정보에 대한 수정에 대해 명시한 경우, 위원회는 제안된 수정 사항을 검토한다.
- (d) 위원회가 의사의 수정이 만족할 만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프로파일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일반에게 프로파일 을 공개해야 한다.
- (e) 위원회가 의사의 수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회가 만족할만한 양식으로 정보를 제시하 면서 정보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 준수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process that the physician must follow to dispute the information.

- (f) If the physician wishes to dispute the profile information which is in the format satisfactory to the board, the physician must submit a formal letter of dispute to the board within two weeks of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in subsection (e) of this section. The physician must then submit proof of factual error to the board within one month of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in subsection (e) of this section.
- (g) Upon receipt of the formal letter of dispute from the physician, a notation that the information under dispute is "Not available" shall be attached to the appropriate category of the physician's profile and such notation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on the profile.
- (h) After review of the proof provided by the physician during the dispute process as described in subsection (f) of this section, the board shall make a determination as to the profile information to be provided to the public.
- (i) Upon determination by the board of the dispute, the board shall notify the physician of the determination. shall update the physician's profile with the information, shall remove the "Not available" notation and shall make the profile available to the public.

- (f) 의사가 위원회가 만족할만한 양식의 프로파일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는 본 조항 서브섹션 (e) 에 명시된 통지 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 식적인 이의 제기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 해야 한다. 의사는 본 조항의 서브섹션 (e)에 명시된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실적 오류를 입증하는 증거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g) 의사로부터 공식 이의제기 문서를 접 수하는 경우, 의사 프로파일의 해당 범주 에 이의제기 중인 정보는 "이용 불가"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해당 표시는 프로파일 상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 (h) 본 조항의 서브섹션 (f)에 명시된 바 와 같이 이의제기 과정에서 의사가 제공 한 증거를 검토 한 후, 위원회는 일반에게 프로파일 정보를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
- (i) 이의제기에 대해 위원회가 결정을 내 린 경우, 위원회는 의사에게 해당결정에 대해 통보하고, 의사 프로파일 내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이용 불가" 표시를 제거한 후, 해당 프로파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참고문헌】

- 윤민섭 외 4인, 「2018 법령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연구」, 한국소 비자원 정책자료집 18-1, 2018
- 권건보,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주요 법리 분석", 아주법학 제12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FSMB,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hysician Profiling", 2000.
- FSMB, "U.S. Medical Regulatory Trends and Actions", 2016

<Executive Summary>

A Comparative Study on the Physician Profile Disclosure System

Yun, Min Seop

I. Study Purpose & Method

\square On July 9, 2018, the Consumer Policy Board advis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disclose Physician Profile.						
O Currently, Physician Profile is not disclosed except in cases where						
physician voluntarily disclose the information, thus limiting						
consumers' right to know.						
\square The Physician Profile Disclosure System, which has not been						
implemented in Korea, needs to review overseas cases and similar						
domestic cases in introducing the system,						

II. Key Research Results

 \squar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ian Profile

- - O The physician profile is necessary for consumers to select the physician, including license information, medical history, research experience, and medical negligence records.
 - O Therefore, the physician profile corresponds to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L
- Review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Physician Profile Disclosure System
 - (Privacy Infringement) In the legal judgment of privacy infringement,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ed may be problematic rather than the introduction of the medic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tself.
 - (Regulatory possibility through current system) There are disciplinary systems and disclosure of sex crimes information, but the current system limits the right of consumers to know.
 - (Equity with other professions) Other professions, such as lawyers and accountants, are providing disciplinary information.
 - (Social stigma) In the case of negative information such as disciplinary information, side effects can be minimized by adjusting the disclosure period.
 - O (Freedom of occupation) If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increases indiscriminately, it can affect the direct performance of the physician.

	Analy	ysis	of	overseas	cases
--	-------	------	----	----------	-------

- O (USA) According to data from the FSMB(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the disclosure system has been provided by 50 states since it was introduced in Massachusetts in 1997.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ed.
- O (USA) According to data from the FSMB(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the disclosure system has been provided by 50 states since it was introduced in Massachusetts in 1997.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ed.
- O (Canada) Canada also has a different range of information available for each state.
- ☐ Analysis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Korea for Professional **Professionals**
 - O In Korea, disciplinary accounts for lawyers, accountants and tax payers are released on the association's homepage on the basis of laws and the internal regulations of the association.

III. Improvement & Policy works

In	orde	r to	secure	cons	sumers'	right	to	know	and	prevent	side
eff	ects,	it is	necessa	ry to	expand	the	scop	e of	physic	ian prof	ile to

be disclosed to consumer such as the validity of licenses and training experience.

☐ In implementing the physician profile disclosure system, a system design based on consumer-centeredness, minimalist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the medical personnel, and securing effectiveness is needed.

정책연구 18-22

의료인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인 쇄 / 2018년 12월 발 행 / 2018년 12월

발 행 / 한국소비자원

27738

발행인 /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 회 숙 인쇄인 / 전우용시촌(주) ☎ 426-4415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전 화 / 043-880-5500 등 록 / 제3-348호(1991년 5월 17일)

ISBN 979-11-5649-403-4

본 연구의 내용은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